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730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4월 30일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동 조례안 제4조제1항 후단에 규정된 학교 밖 청소년의 “개인정보를 연계” 는 개인정보를 어디로 연계하여야 할지에 대한 대상이 누락되어 있고, 상위법인 학교밖청소년법에서 “지원센터를 연계”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“개인정보” 문구를 “지원센터” 로 수정함.
- 동 조례안 제4조제2항 전단에 규정된 “개인정보를 연계” 는 안 제1항과의 조문체계상 “지원센터를 연계” 로 수정함.
- 현행 학교밖청소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로 돌아올 경우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을 뿐 학교장은 이에 대해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, ‘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’ 문구를 ‘할 수 있다’ 로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- “개인정보” 를 “지원센터” 로 수정함(안 제4조제1항).
- “개인정보를 연계” 를 “지원센터를 연계” 로 수정함(안 제4조제2항).
- “하여야 한다” 를 “할 수 있다” 로 수정함(안 제4조제3항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 중 “개인정보” 를 “지원센터” 로 한다.

안 제4조제2항 중 “개인정보를 연계” 를 “지원센터를 연계” 로 한다.

안 제4조제3항 중 “하여야 한다” 를 “할 수 있다” 로 한다.

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-----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”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교육, 직업체험 및 훈련, 상담, 자립 등의 지원 사업을 말한다.

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,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, 제4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학교장의 책무) ①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(이하 “학교장”이라 한다)은 소속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,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연계하는 경우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 및 교육

감이 운영하는 도움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.

③ 학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재취학, 재입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3조(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)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, 경찰청 등 유관기관,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4조 ~ 제11조 (생략)

<신설>

제12조 (생략)

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5조 ~ 제12조 (현행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)

제13조(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)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, 경찰청 등 유관기관,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4조 (현행 제12조와 같음)